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0다26769 손해배상
원고, 피상고인 원고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
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1인
피고,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4인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8나106190 판결
판 결 선 고 2010. 11. 11.

주 문

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, 상고의견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1. 직무발명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

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,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,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,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,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1995년경 한국산 고령토를 산 처리 또는 염화암모늄 처리 등으로 활성화시킨 후 소성시켜 얻어진 촉매 및 그 촉매를 이용하여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(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, 이하 'PTMEG'라 한다)의 중간물질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(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Diester, 이하 'PTMEA'라 한다)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(이하 '이 사건 발명'이라 한다)을 완성한 후, 이 사건 발명의 특허출원일인 1995. 6. 2.경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이하 '이 사건 권리'라 한다)를, 소외 1 주식회사가 PTMEG 제조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묵시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그런데 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양도약정의 의미를 그와 같이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데,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한 이후 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에서 전무, 부사장으로 차례로 승진하여 2000년 8월경까지 근무하다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퇴직하였고, 2000년

10월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12월경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,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PTMEA를 제조하는 획기적인 촉매 및 그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향후 이를 사업화하는 경우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대가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, 달리 원고가 그 양도대가를 포기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, 위 양도 당시 원고는 양수인인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대금(이하 '이 사건 양도대금'이라 한다)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권리의 양도 당시에는 아직 그에 대한 특허등록도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발명의 실시에 의한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이 사건 권리의 양도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, 그에 따라 양도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권리의 객관적 가치 이외에 그 양도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 아래 2005년 1월경 변리사를 찾아가 그 보상방안 등을 문의하면서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상담을 하였고, 2005. 3. 30. 피고에게도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권리의 양도대가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소외 2 주식회사를 합병한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3 주식회사가 PTMEG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실질

적인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사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피고도 원고의 위 보상요구를 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소외 2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액에 관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, 피고의 이러한 협상태도는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의사에 기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일반적으로 자유발명의 양도대가는 직무발명의 양도대가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, 자유발명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은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,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, 이 사건 권리의 양도 당시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는 적어도 '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'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, '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'을 양도대금이라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,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.

2. 피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

가. 영업양도로 인한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

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,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

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처분문서인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서 2.3조에는 인수부채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, 2.4조에는 '2.3조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피고는 마감일 이전에 사업운영상 발생하는 매도인의 어떠한 부채나 채무도 인수하지 않고, 또한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'고 기재되어 있으므로,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는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위 영업양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. 나아가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가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에 수반되는 성질의 채무라고 할 수 없고, 또한 원심 판시 각 사정은 위와 같은 영업양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가 인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, 위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는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본 것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. 그러나 아래 2. 나항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, 피고는 원고에게 「상법」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,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.

나. 피고가 「상법」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

는 주장에 관하여

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「상법」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만 한하지 않고,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,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(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피고는 원고의 2005. 3. 30.자 내용증명에 의한 보상요구에 대하여 2005. 5. 24. 및 2005. 6. 7. '원고가 요청한 사항이 청구 유효기간 내에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, 청구 내용에 대해서 청구 효력의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원고와 협의하여 나가겠다'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원고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,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양도인인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, 「상법」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.

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.

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「상법」 제4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.

3. 피고가 얻었거나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

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

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, 직무발명의 양수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양수인이 처한 우연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양수인의 이익액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,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.

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'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'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발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소외 2 주식회사가 얻을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인 제3자가 얻을 이익액까지 참작하여 산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새로운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「상법」 제44조에 의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피고는 원고에게, 소외 2 주식회사 및 이를 합병한 소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발명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이익액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액수를 산정하고 말았으니, 여기에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_____

 대법관 양승태 _____

주 심 대법관 김지형 _____

 대법관 전수안 _____